

종합계약 관련기관 표준협정서 (공동집행방식)

제1조(목적) 본 협정은 종합계약집행요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체결·집행함에 있어 협의체의 각 관련기관 간에 용역의 내용, 입찰, 계약체결, 용역비(보험료)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.

1. 용역명 : 공무원 단체보험 통합계약 용역
2. 용역기간 : 2024. 1. 1. 00:00부터 2024.12.31. 24:00까지
3. 예정금액 : 기관별 가입대상자 확인 후 결정
4. 보장내용 : 2024년 공무원 단체보험 통합계약 표준협정서 안내 『붙임 2』

제2조(관련기관협의체) 관련기관협의체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

1. 명칭 : 공무원 단체보험 통합계약 가입추진단
2. 소재지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, 공무원연금공단

제3조(관련기관협의체의 관련기관) 관련기관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의 관련기관과 대표기관은 『붙임 3』와 같다.

제4조(책임) ①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본 표준협정서에 날인함으로써 공동으로 계약 당사자가 된다.

② 본 용역 계약상의 모든 이행사항(보험료 납부, 보험료 정산, 보험료 청구 및 지급, 본 용역관련 소송 등)의 책임은 협의체의 각 관련기관이 진다.

제5조(효력기간) 본 표준협정서는 협의체 관련기관의 날인으로 발효하며,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. 다만, 본 표준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본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존속된다.

제6조(대가지급) 본 계약의 용역비(보험료)는 협의체의 각 관련기관이 보험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사에 납부한다.

제7조(권한위임) 협의체의 각 관련기관은 단체보험 통합계약 입찰의 실시, 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위임한다.

2023. 11. 02.

기관명 :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

